

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차 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호	690
-----------	-----

2023년 6월 21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

나. 제안일자 : 2023년 3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03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19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23년 6월 2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실장 윤종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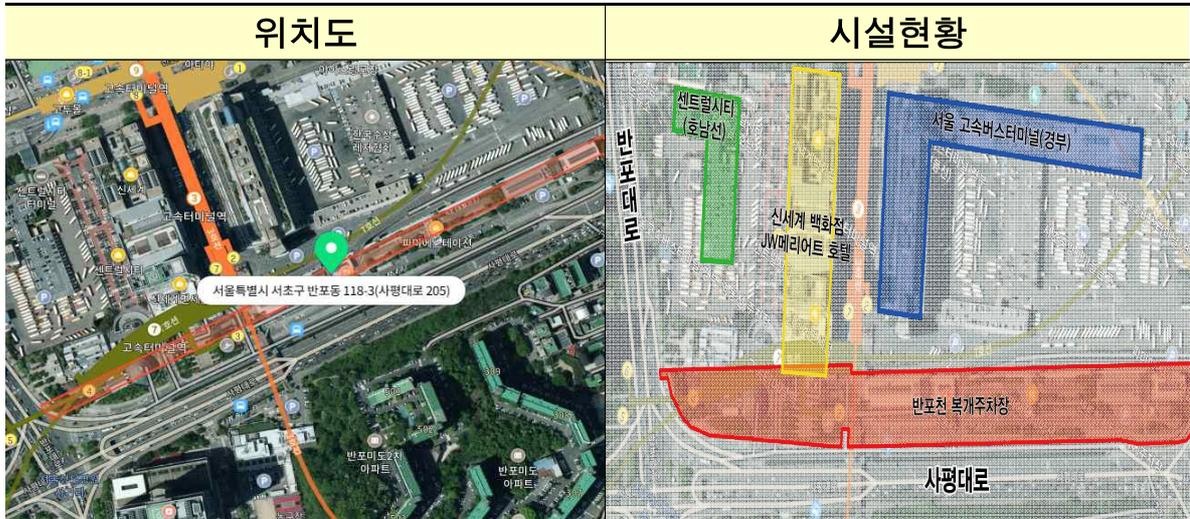
가. 제안사유

- 무상사용기간 종료(2023.10.9.) 후 우리시로 반환되어 서울시설공단에
서 운영 대행하기로 결정된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제3자에 위탁하여 운
영하고자
-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에 따라
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사무명 :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(민간업체)
- 위탁 추진개요
 - 위탁기간 : '23. 10. 10. ~ '28. 10. 9.(5년)
 - 대상시설 : 반포천 복개주차장

주차장명	위 치	총면적 (m^2)	규 모	주차면수
반포천복개	서초구 반포동 118-3 외 7필지	83,218	B1~5층	1,181



○ 위탁 필요성

- 반포천 북개주차장 주변시설(신세계백화점, 호남·경부선 터미널)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수 후에도 현 수준의 주차 및 부대시설 이용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함
- 반포천 북개주차장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, 현 ‘운영형태’와 유사한 ‘관리위탁자’를 선정하여, 반포천 북개주차장을 효율적·전문적으로 운영코자 함
- ※ 관리이행계획 용역(서울연구원 공공투자센터, '20.7월) 및 활용구상안 마련 용역(공공개발기획단, '20.8월) 결과, 인수('23. 10.) 후 운영 방식은 공공위탁(공단 직영)이 아닌 ‘민간 관리위탁’ 제안
- 공단의 운영 전문성 미흡 및 과대한 조직 확대 등 비효율성 방지

○ 추진방법 :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적격업체 선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
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~ ⑦ 생략

○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
제10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3.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
4.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
5.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기부채납한자(단, 인근에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)

② ~ ③ 생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민자사업자의 반포천 복개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서울시로 반환되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 대행하기로 결정된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제3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「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」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「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관련 규정

- 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검토의견

■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 현황

- 반포천 복개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민자주차장으로 1999년 서울시와 (주)센트럴시티간 복개주차장 건설에 관한 실시협약 체결¹⁾ 후 2000년 10월 임시사용 승인과 함께 2005년 준공되어 20년간 ('00.10.10~'20.10.9.)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이 시작되었음
- 시설 규모는 지하1층, 지상5층의 노외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로 구성되어 있고, 시설규모는 주차장 1,181면, 부대시설 면적 18,023㎡ 등을 포함한 연면적 83,217㎡(주차장 36,211㎡, 부대시설 18,023㎡, 노외주차장 28,982㎡)이며 현재 56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음

※ 참고 : 반포천 복개주차장 시설 현황

구 분		주 요 내 용		위 치 도
위치/대지면적		서초구 반포동 118-3번지 외 7필지 / 33,838.7㎡		
층 수		지하1층 / 지상5층		
귀속 시설 연면적	주차장	36,211.99㎡	소계 83,217.64㎡	
	부대 시설	18,023.65㎡		
	노외주차장	28,982㎡		
주차면수		1,181면 자주식		
부대시설		56개 점포 운영		

1) 반포천 복개주차장 건설에 관한 협약서 실시협약(1999.4.29.)

○ 반포천 복개주차장 무상사용 만료 기간 도래('20.10.9.)에 따른 주차장 인수를 앞두고 서울시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²⁾과 관련지침³⁾에 따라 반포천 복개 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한 결과⁴⁾ RTO방식⁵⁾을 통한 공공시설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(주)신세계센트럴시티 반포천 복개주차장 민자 운영종료 시점('20.10.9.)을 3년 연장('23.10.9.)⁶⁾하는 한편 '20년 9월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, 서울시설공단이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대행·관리토록 하는 동의안을 의결 받은 바⁷⁾ 있음

-
- 2) **제7조(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·공고 등)**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하고, 이를 공고(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3) **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의2(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)** ② **주무관청**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설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1.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
 2. 제1항 각 호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여부
- 4) **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시행**(반포천 복개주차장 등 7개 주차장)
- 용역기간 : '19.10.18~'20.12.17(용역비 : 421백만원)
 - 용역사 : 서울연구원(공공투자관리센터)
 - 과업내용 : 시설유지 필요, 개량·증축 우선순위 높음
 - 시설 현황 검토 (시설상태, 주차수요, 서비스 기능 검토 등)
 -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유지여부 검토
 -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사업 추진방식 검토(민투사업 재추진, 민간위탁, 공공운영, 매각·처분)
- 5) 「**2014년**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추진 일반지침」 제3조(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)
6. **RTO(Rehabilitate-Transfer-Operate)방식**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·보수·증설 또는 확장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
- 6) 반포천 복개 민자주차장 변경 실시협약서('20.10.9.) 제2장 기본약정 제6조(사용기간) 2020.10.10.부터 2023.10.9.까지(36개월)로 한다. -이하 생략-
- 7) 제296회 임시회 「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행 동의안」(의안번호 제1775호) : 소관회의 심사 경과 원안가결('20.9.8.), 본회의 심사경과 가결('20.9.15.)

- 하지만, '21년 추진한 '반포천 복개주차장 활용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'8)에서는 현 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었고 변경 실시 협약기간(3년 연장) 만료를 앞둔 '23년 3월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서 서울시설공단이 동 시설물을 대행·관리토록 하는 동의안이 가결9)되었음

※ 참고 : 「반포천 복개주차장 조성 및 추진경위」

- '94. 10.13. : 서울종합터미널 신축 관련 반포천복개 활용방안 수립(시장방침 1939호)
- '95. 5.30. : 대상사업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(재정경제원고시 1995-22호)
- '95. 8.28. :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
- '98. 7. 2. : 건축허가 (서초구)
- '99. 4.29. : 실시협약체결 (서울시 ↔ 센트럴시티)
- '00. 6.29. : 실시계획 승인
- '00.10.10. : 임시사용 승인
- '00.10.10. : 민자 주차장 운영 개시 (임시사용 승인, 무상사용 20년)
- '08. 3.31. : 반포천 복개주차장 기부채납
- '19.10.18. : 민자주차장 관리이행계획수립 용역시행 (주차계획과)
- '20.07.22. : 반포천 복개주차장 인수·관리계획 수립(주차계획과-9139호)
- '20.08.28. : 반포천 복개주차장 활용구상 및 사업화방안 마련 용역 추진계획 수립 추진 (공공개발기획단-8708호)
- '20.09.08. : 제296회,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행 동의안 심사 (시의회) : 원안가결
※ 대행기간 1년 3개월 ('20. 10. 10. ~ '21. 12. 31.)
- '20.10.08. : 운영에 대한 사용기간 3년 연장 (서울시↔신세계)
※ 사용기간 3년 연장 ('20.10.10 ~ '23.10.9.) RTO 추진 소요기간
- '22.05.03. : 반포천 복개주차장 활용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 결과 'RTO' 사업 관련 용역결과 : '현시설 존치'
- '23.03.07. : 제316회 임시회,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행 동의안 심사 (시의회): 원안가결
※ 대행기간 3년 2개월 ('23. 10. 10. ~ '26. 12. 31.)
- '23.04.03. : 제318회 임시회,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위탁 동의안 회부 (시의회)
※ 동의안 보류

8) '반포천 복개 주차장 활용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' 용역(공공개발기획단-8708), 보고서 제출('21.12.)

9) 「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」 소관회의 원안가결('23.3.7.), 본회의 가결('23.3.10.)

■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

- 동 동의안은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제3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9조¹⁰⁾ 및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0조¹¹⁾ 등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
-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민자주차장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'16년에 수립한 '공영(시영)주차장 위탁관리 체계 개선 계획'¹²⁾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르면 높은 운영수익과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지만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3자위탁(민간위탁)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[별첨1·2]_참조
-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관리이행계획 용역¹³⁾ 결과에 따르면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경우 연간 임대료 수익이 높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나 주차장 이용율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고, 이는 앞서 말한 서울시

10)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11)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0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.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.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5.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·기부채납한자(단, 인근에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)

12) '공영(시영)주차장 위탁관리 체계 개선 계획' 주차계획과-3922(2016.3.24.)

13) '반포천 복개주차장 민간투자사업(BTO) 운영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' ('20.12.)

- 반포천 복개주차장은 귀속 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을 판단. 176p

기준에 따라 제3자위탁 방식에 부합하는 바,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제3자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해된다 할 것임

- 다만, 민자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인 ‘공영(시영)주차장 위탁관리 체계 개선 계획’은 ’16년도에 수립된 기준으로 현재 변화된 주차장 운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해당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며, 추후 서울시설공단이 반포천 복개주차장과 같은 복합 주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할 것임
- 향후 서울시는 동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, 범위, 자격 등 공정한 입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특혜 논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위탁료를 관련 기준에 따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위탁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

[별첨 1]

공영주차장 주차장별 위탁대상 선정 기준(안)

위탁기관	선정기준	사 유	
공 단 (직영) (42개소 11,020면)	환승주차장	공공복리 증대 필요	
	특수목적(화물조업, 관광버스) 주차장	전문적 주차 관리 필요	
	신규 발굴 주차장	초기 안정적인 주차관리(운영) 필요	
	시설물(건축물) 주차장 중 이용율 높은 주차장	전문적 시설관리 필요	
	복개구조물 주차장	전문적 시설물 안전 관리 필요	
	일시폐쇄 후 재운영(예정) 공영주차장	안정적 주차관리(운영) 필요	
	기 타	市 정책추진으로 공단 운영 필요	
제3자 위 탁 (95개소 6,876면)	민간 위탁	운영수익이 높고 안정적 운영 보장 되는 주차장	
	민간 위탁	시설물(건축물) 주차장 중 이용률 저조 주차장	
	기타	노상주차장 중 도로관리 주체가 자치구인 주차장으로 자치구 운영 희망 주차장	민간인의 경영참여 곤란,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 등 지역여건에 맞는 운영 필요 (자치구)
		이용시민이 지역 거주민이 대다수인 주차장	
		전통시장 인근 주차장	

※ 공단 위탁주차장 운영 및 예산에 따라 제3자 위탁대상 주차장 변경 가능

[별첨 2]

〈서울시 민자주차장 현황〉

연번	주차장명 (주소)	시설현황				사업비 (억원)	사업시행자	사용개시 사용종기	사용기간	운영방식
		연면적	규격	주차 면수	접포 수					
1	종묘 (종로구 훈정동 5)	55,188	지하5층 지상1층	1,418	2	230	SP개발(유)	91.12.24 10.12.23	20년	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0조 시설공단직영
2	마포 (마포구 마포동 36-5)	30,960	1층 3개동	602	3	70	SP개발(유)	92.03.06 12.03.05	20년	"
3	세종로 (종로구 세종로 80-1)	47,977	지하6층	1,353	21	250	SK건설(주)	92.09.01 12.08.29	20년	"
4	동대문 (중구 신당동 251-7)	67,130	지하6층 지상5층	1,103	342	289	동부건설(주)	93.07.09 13.07.08	20년	"
5	영남 (영등포구 영등포4가 123)	25,166	지하3층 지상5층	805	5	109	대림산업(주)	93.12.29 13.12.28	20년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(민간위탁) 운영: (주)과광투인
6	신천유수지 (송파구 신천동 14)	30,264	1층 3개동	269	2	52	SP개발(유)	97.04.16 14.03.15	16년 11월	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0조 시설공단직영
7	훈련원 (중구 을지로5가 40-3)	58,431	지하5층 지상1층	924	96	431	쌍용건설(주)	97.06.30 17.06.29	20년	"
8	면목유수지 (중랑구 면목동 168-2)	59,665	지하1층 지상3층	1,008	2	371	홈플러스테스코 (주)	99.09.04 19.09.03	20년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, 제20조 (자치구위임 + 민간위탁)
※ 2019년 인수시 1,008면 주차구역과 2개소 부대시설 중 주차면 567면은 중랑구에 위임하고, 주차면441면과 부대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결정(운영자:홈플러스)										
9	흑석3동 (동작구 흑석3동 95-7)	3,780	지상4층 지하1층	108	1	29	하이그린파크(주)	02.02.26 19.02.25	17년	폐쇄
10	신월3동 (양천구 신월3동 170-6)	4,295	지상2층	179	2	16	(주)새서울개발	00.11.02 20.11.01	20년	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(자치구 위임)
11	장안1동 (동대문구 장안동 392-3)	2,445	지상3층	77	7	12	(주)인터그린랜드	01.05.29 21.05.28	20년	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0조 시설공단직영
12	암사1동 (강동구 암사1동 473-3)	3,385	지상4층 지하1층	100	2	17	하이그린파크(주)	02.05.16 22.05.15	20년	"
13	신월4동 (양천구 신월4동 411-1)	1,535	지상3층 지하1층	58	1	8	(주)썬보	01.09.26 21.09.25	20년	"
14	면목2동 (중랑구 면목2동 183-14)	3,601	지상3층 지하1층	129	2	20	에릭스 에프앤비(주)	02.09.01 22.08.29	20년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(자치구 위임)
15	구로동 (구로구 구로동 94-1)	2,821	지상4층 지하1층	72	3	16	하이그린파크(주)	02.11.22 22.11.21	20년	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0조 시설공단직영
16	양재역 (서초구 양재동 23-2)	45,561	지하4층 지상5층	894	56	256	(주)동성종합건설	96.01.06 26.01.05	20년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10년연장
17	반포천 (서초구 반포동 118-3)	83,165	지상4층 지하1층	1,181	51	446	(주)센트럴시티	00.10.10 23.10.09	20년	민간투자법 제25조 3년연장
18	중곡1동 (광진구 중곡1동 230-12)	6,565	지상5층 지하1층	140	6	31	(주)경동개발	03.11.13 23.11.12	20년	
19	시흥본동 (금천구 시흥본동 886-14)	3,887.0	지상4층 지하1층	122	5	25	(주)새서울물산	04.06.28 24.06.27	20년	
20	거여동 (송파구 거여동 33-3)	12,886	지상7층 지하1층	282	3	80	(주)한맥기술	04.08.21 24.08.20	20년	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9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3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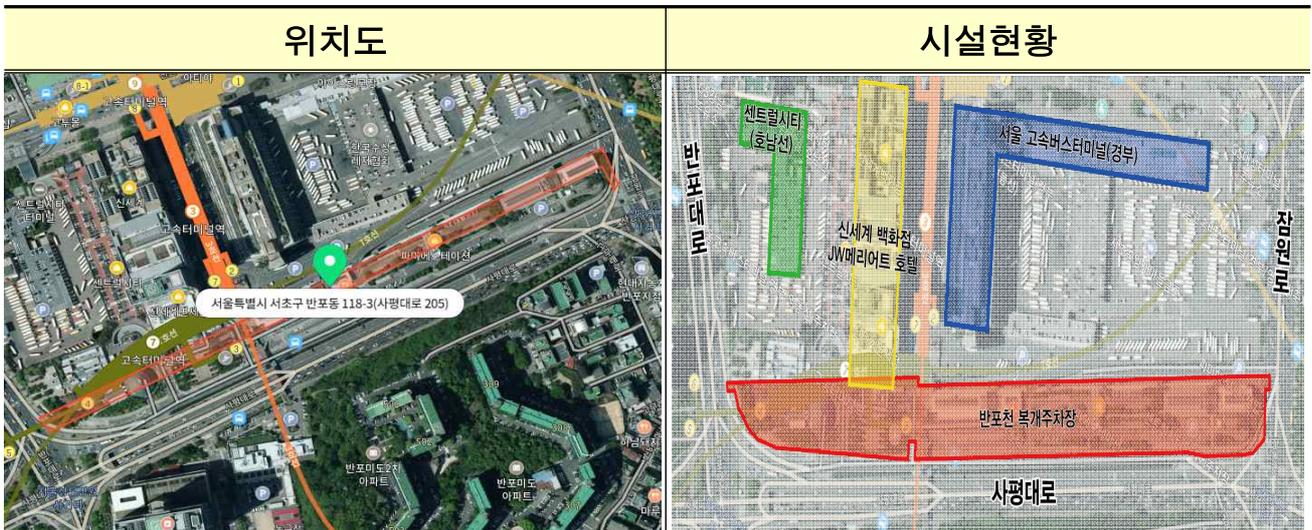
1. 제안이유

- 가. 무상사용기간 종료(2023.10.9.) 후 우리시로 반환되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 대행하기로 결정된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제3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
- 나.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무명 :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(민간업체)
- 나. 위탁 추진개요
- 위탁기간 : '23. 10. 10. ~ '28. 10. 9.(5년)
 - 대상시설 : 반포천 복개주차장

주차장명	위 치	총면적 (m^2)	규 모	주차면수	부속시설 (점포)
반포천복개	서초구 반포동 118-3 외 7필지	83,218	B1~5층	1,181	56



다. 위탁 필요성

- 반포천 복개주차장 주변시설(신세계백화점, 호남·경부선 터미널)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수 후에도 현 수준의 주차 및 부대시설 이용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함.
-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, 현 '운영형태'와 유사한 '관리위탁자'를 선정하여,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효율적·전문적으로 운영코자 함.
 - ※ 관리이행계획 용역(서울연구원 공공투자센터, '20.7월) 및 활용구상안 마련 용역(공공개발기획단, '20.8월) 결과, 인수('23. 10.) 후 운영 방식은 공공위탁(공단 직영)이 아닌 '민간 관리위탁' 제안
- 공단의 운영 전문성 미흡 및 과대한 조직 확대 등 비효율성 방지

라. 추진방법 :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적격업체 선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
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완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~ ⑦ 생략

○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0조

제10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3.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
4.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
5.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·기부채납한자(단, 인근에 사업장을 영위 하는 경우에 한함)

② ~ ③ 생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강영호(☎ 2133 - 2375)